

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8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최호정, 강석주, 김경훈,
김규남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신복자, 윤종복, 이상욱,
이성배, 이종환, 임규호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허·훈, 황유정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·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등이 급증하였으나,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- 이에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이 개정되어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넘어 ‘노무제공자’라는 포괄적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이 마련되었음.
- 본 조례는 플랫폼·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을 구체화함(안 제9조의 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사회보험료 지원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등(이하 “사회보험”이라 한다) 사회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2. 지원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
3. 그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</u>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의2(사회보험료 지원) ①</u> 시장은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(이하 “사회보험”이라 한다) 사회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2. 지원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

3. 그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9조 (지원사업 등)제1항제5호를 제9조의2(사회보험료 지원)와 같은 별도의 가지조항으로 변경하고자 것이며 이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¹⁾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입법 정책의지 고려제외] 동일한 내용의 현행 규정을 가지조항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는 정책 (서울시 관련부서 유선문의 결과 현재 미시행) 시행을 촉구하는 입법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(입법조치의 정책촉진적 기능)로 이해될 수 있으나, 본 사안의 경우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뿐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던 제정 당시와 본질적인 측면에서 달라진게 없어 규정에 의해 재정수반 요소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 고려대상에서 제외함